서 면 답 변 서

소 속	평 창 군 의 회	질문위원	(이 창 열) 위원	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기획실장)	일 자	질의	2022년 11월 28일
			답변	2022년 11월 29일
회 의	제281회 평창군의회 제(1)일차 **행정사무감사활동**			

질문요지

□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, 절차상 부분 및 시간적 상황에 대하여

답변내용

○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절차적 부분 및 시간적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.

<절차적인 부분>

○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·공단 설립시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의거 시도는 행정안전부와, 시군구는 시도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.

○ 2021. 2. 15일자로 설립된 평창군 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도 협의와 조례 제정에 있어서

- 2020. 9. 1. 「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
- 2020. 10. 16. 강원도로부터 공단 설립에 관한 협의 결과를 통보받았으며(협의 결과 : 적정)
- 2020. 10. 19. 제260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「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대해 수정의결을 득하였습니다.

○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사전설명과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

○ 향후에는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,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, 도와의 협의 결과 및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 설립과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에 대하여 의회에 설명(협의)하는 과정 등 모든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

<시간적 상황>

○ 2021. 2. 15일 설립 후 운영 중에 있는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2020. 10. 19일 평창군의회 조례 의결 후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6조, 제57조, 제58조 등에 따라 정관, 제규정 작성 및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공모 및 임명, 시설관리공단 설립등기 및 설립보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습니다.

○ 주민들의 의견과 시설 운영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2021년 2월 설립 완료 및 운영을 목표로 원활한 공단 설립 및 운영을 하고자 추진하는 부득이한 과정이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.

<평창군시설관리공단 평가 관련>

○ 지방공기업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(경영평가 및 지도),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, 행정안전부의 지도 하에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○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2021. 2. 15일자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2021년 신설된 공기업으로 평가 제외되었으며 2023년도부터 평가 대상입니다.